

## 10.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대해 알려 주세요.

### 1. 사업대상자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,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(려)는 자
- \*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기준면적은 3ha 이상으로 하되, 사업계획서에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운영 후 3ha 이상으로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1ha 이상 가능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농업인 :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라 축산업(가축사육업)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된 자
- 농업법인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
- \*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
- 생산자단체 :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·축·낙협 등
- 지방자치단체 등 : 「지방자치법」에 제2조에 따른 시·군·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

### 3. 지원대상

- 사업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사 등
- 대상축종 : 한·육우, 젖소, 말, 닭, 오리, 산양(염소)·면양, 사슴, 토끼 등

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초지조성 : 초지조성(경운·불경운·임간초지)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, 자재대, 측량수수료, 초지·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,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

### 5. 지원형태

- 초지조성 : 축산발전기금 보조 50%, 융자 50%(연리 2%,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)
- 초지조성부담금 : 축산발전기금 보조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- 컨설팅 : 축산발전기금 보조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- 기계·장비 : 축산발전기금 보조 10%, 지방비 30%, 융자 30%(연리 2%,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), 자부담 30%
- 기반시설 : 축산발전기금 융자 80%(연리 2%,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), 자부담 20%

【초지사료과 | 041-580-6741】